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5. 10.

 로템에스알에스(주)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 SRS-경관-001
		개정번호 : Rev.01
		쪽번호 : 13 쪽중 1

목 차

제1장	용역의 개요-----	2
1.	목적-----	2
2.	용역의 개요-----	2
3.	계약기간-----	2
4.	과업수행 장소-----	2
5.	과업수행 인원-----	2
6.	과업의 범위-----	2~3
7.	관련법령 및 내규-----	3
제2장	용역 수행 방법-----	4
1.	일반사항-----	4
2.	용역 착수 및 시행-----	4
3.	과업수행 장소-----	4
4.	과업인원의 배치 및 근무시간-----	5~6
5.	현장대리인 지정 및 임무-----	6
6.	교육사항-----	7
7.	과업준비사항-----	7
8.	소모품 및 부품의 공급-----	7
9.	과업내용-----	8~9
10.	보수품질의 수준-----	9~10
11.	고장범위 및 비운행시간의 정의-----	10~11
12.	기성검사원 작성 및 제출-----	11
13.	환경 및 폐기물 관리-----	12
14.	비상연락체계 유지-----	12
15.	결원의 충원-----	12
16.	업체 간 인수인계-----	12
17.	안전사고 및 배상 책임-----	12~13
18.	시설물 관리 및 부대비용-----	13
19.	이의의 해석-----	13
20.	보안관련-----	13
21.	조문의 해석-----	13
22.	소송의 관할 법원-----	13
23.	문서 등 귀속-----	13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 SRS-경관-001
		개정번호 : Rev.01
		쪽번호 : 13 쪽중 2

제1장 용역의 개요

1. 목적

- 신림선 도시철도 11개 역사 및 종합관제동, 차량기지의 승강설비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고객의 원활한 역사 이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용역의 개요

- 2.1 용역명 :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 2.2 계약자 : 로템에스알에스 주식회사(이하 “갑”)
- 2.3 과업내용 :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4. 과업수행 장소

- 신림선 도시철도 11개 역사 및 종합관제동, 차량기지

5. 과업수행 인원

- 관리소장 1명, 책임자 2명, 기술원 2명 등 최소 5명 이상
- 교대근무자(책임자, 기술원)은 휴일, 주말 포함 근무를 하며 3조 2교대로 운영

6. 과업의 범위

- 6.1 설비에 관한 운영 및 자체점검 실시 및 법정점검(정기 및 수시검사 등), 특별점검, 입회
- 6.2 설비 성능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교체주기에 의거하여 장비 및 기기부품의 수리 또는 소모품 교체 수행
- 6.3 설비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모든 자료관리 및 보존(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한다.)
- 6.4 열차운행시간을 고려한 근무체계 구축 및 취약시간대 고장 및 사고에 대비한 출동체계 구축(30분 이내 현장 도착 후 고장처리)
- 6.5 설비의 장애 및 점검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발생 시 책임 및 후속조치
- 6.6 설비 시설물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용역 근로자 관리체계 확립 및 수시·정기 보고
- 6.7 특별행사, 긴급복구, 비상사태 등 특별업무의 수행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 SRS-경관-001
		개정번호 : Rev.01
		쪽번호 : 13 쪽중 3

- 6.8 “갑”의 요청에 따라 대외 및 대내용 자료 지원
- 6.9 민원발생, 반복고장, 기능저하 등의 장비에 대한 원인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보고
- 6.10 해당 시설물에 대한 검사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작성(월간/분기/반기/연간)
- 6.11 해당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절차서 작성 및 보완
- 6.12 해당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 업무 지원
- 6.13 기타 “갑”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업무처리

7. 관련법령 및 내규

- 7.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등록된 업체
- 7.2 당사가 제시한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에 따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
- 7.3 당사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7.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2에 의거 매 분기 정기적인 직무교육(3시간 이상)을 시행하고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7.5 본 과업내용서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철도안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의한다.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 SRS-경관-001
		개정번호 : Rev.01
		쪽번호 : 13 쪽중 4

제2장 용역 수행 방법

1. 일반사항

- 1.1 본 과업내용서는 로템에스알에스(이하“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 간에 계약된 용역 범위 내 승강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필요사항을 규정한다.
- 1.2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용역 착수 및 시행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된 법령 및 “갑”의 규정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착수(업무)계획서를 사업 착수 전 제출하여야 한다.
- 1) 착수신고서 1부.
- 2) 인력배치계획(인력배치계획, 선임계, 조직도,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 등) 1부.
- 3) 책임자(현장대리인) 선임 신고서 1부.
- 4) 위험성평가(도급 발주사업) - “갑”의 안전실에서 실시.
- 5) 보안각서(“을” 및 “을”의 근로자 각 1부)

3. 과업수행 장소

- 1) 역사별 주소

구분	지번주소	도로주소
샛강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지하166(여의도동)
대방역	영등포구 신길동 1375-1번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역	동작구 대방동 466-41번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지하218(대방동)
보라매역	동작구 대방동 466-49번지	동작구 상도로 지하2(대방동)
보라매공원역	동작구 신대방동 722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지하11(신대방동)
보라매병원역	동작구 신대방동 395-61	동작구 보라매로5길 지하24(신대방동)
당곡역	관악구 봉천동 985	동작구 보라매로6(봉천동)
신림역	관악구 신림동 1467-10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1614(신림동)
서원역	관악구 신림동 808-407	관악구 신림로 258(신림동)
서울대벤처타운역	관악구 신림동 110-10	관악구 신림로 144(신림동)
관악산역	관악구 신림동 211	관악구 신림로 23(신림동)
종합관제동	동작구 신대방동 395	동작구 보라매로5길44
차량기지	동작구 신대방동 722	동작구 보라매로5길51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 SRS-경관-001
		개정번호 : Rev.01
		쪽번호 : 13 쪽중 5

2) 역사별 현황

정거장	구 분	계	셋강역	대방역	서울지방 병무청역	보라매역	보라매 공원역	보라매 병원역	당곡역	신림역	서원역	서울대 벤처타운역	관악산역	종합 관제동	차량 기지
	계	108	6	14	12	7	10	10	12	9	9	9	7	1	2
E/S	소계	70	4	10	8	4	6	6	8	8	6	6	4	0	0
E/L	소계	38	2	4	4	3	4	4	4	1	3	3	3	1	2

4. 과업인원의 배치 및 근무시간

4.1 “을”은 예방점검 및 사후보수, 응급조치를 위한 상주인원 2명 이상을 “갑”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야 하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구 분	투 입 시 간	투입인원(인)	비 고
통상근무(소장)	09:00 ~ 18:00	1	휴일 : 토·일, 근로자의 날
교대근무	1 07:00 ~ 16:00	1(조장) 1(조원)	2조 2교대
	2 13:00 ~ 22:00	1(조장) 1(조원)	

※통상근무자는 교대근무자 연차 및 휴무시 교대근무 지원

- 4.2 근무인원은 주간근무와 휴일근무 등 2인이상 반드시 근무하여 하며, 직책별 등급 및 자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4.3 교대근무자 중 결원 발생시 어떠한 형태로든 2인 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4.4 인원 배치에 대하여는 “을”은 매월 배치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 배치된 인원을 “을”의 사정에 의하여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5 “을”은 직원의 태만, 부주의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및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부적격한 자가 근무할 때에는 “을”에게 당해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6 “을”은 혐오감을 주는 신체 표식(문신, 피어싱)이 없는 직원을 배치 운영하여 제규정을 준수하며, 근무 중 관리 소홀로 발생한 일체의 사고는 “을”이 책임을 진다.
- 4.7 5명 전원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교육을 받아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정하며, 자격은 아래와 같다.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 SRS-경관-001
		개정번호 : Rev.01
		쪽번호 : 13 쪽중 6

구 분	등급	기술자격 및 학력 · 경력 기준
관리소장	고급기술자	기계, 전기분야 책임능력이 있는 자로서, ① 해당분야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며, 7년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며, 10년이상 경력자
책임자	중급기술자	기계, 전기분야 기술주임능력이 있는 자로서, ① 해당분야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며, 4년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며, 7년이상 경력자 ② 자격증 미소지자로서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로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기술원	초급기술자	기계, 전기분야 기술계 고등학교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해당 기술관련 직업 훈련원 수료자 또는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5. 현장대리인 지정 및 임무

5.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용역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담당할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과업에 대한 총괄관리 및 책임
- 2) 직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
- 3)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계획 및 유지관리
- 4) 본 계약 업무 이행에 관한 "갑"과의 업무 연락 및 조정

5.2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갑"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기존의 현장대리인 해임 및 신규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5.3 현장대리인이 업무수행 중 아래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갑"는 계약상대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요구에 임해야 한다.

- 1) 현장대리인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2) 현장대리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 3) 현장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 4) 현장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계약기간을 경과하고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 5) 현장대리인으로 인하여 보안, 안전 유지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할 때
- 6) 작업장의 소요사태를 야기하거나 집단 작업거부 및 음주, 폭행 사태 등으로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
- 7) 기타 현장대리인이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 SRS-경관-001
		개정번호 : Rev.01
		쪽번호 : 13 쪽중 7

6. 교육사항

- 6.1 “을”은 철도산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매 분기마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3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6.2 “을”은 직원에 대한 제반 교육을 “을” 및 본인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6.3 교육과 관련한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6.4 매월 직무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교육확인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로 불가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7. 과업준비사항

- 7.1 “을”은 승강설비 점검관리 용역 수행에 있어 관련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유 장비를 이용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수공구 및 점검 장비는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하게 확보하고 보유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유지관리설비【별표 1】
 - 2) 공업용 진공청소기 또는 콤프레셔 등 각종 청소 장비 2Set 이상
 - 3) 기타 “갑”이 점검, 정비, 보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비 및 공기구
- 7.2 “을”은 공기구 등의 보유목록을 “갑”에게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 7.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안전 장구류는 별도로 확보하여 각 근무 장소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 7.4 “을”이 보유한 측정기기 등은 법정 검·교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하며, 항상 정상 기능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소모품 및 부품의 공급

- 8.1 용역에 필요한 아래의 소모품은 “을”이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1) 각종 오일류(그리스, 윤활유 등 각종 보충유, 단, 감속기 교체 오일 제외) 및 기판 세척제류 등 청소 소모품
 - 2) 저용량의 퓨즈 · 저항류 · 릴레이, 스위치류, 스피커, 부저, 자석, 건전지, 롤러, 오일씰 등
 - 3) 버튼류(비상정지버튼 커버 포함), 램프류, 전선류, 등기구류(형광등, 조명등, 안정기 포함, LED조명등과 램프 제외)
 - 4) 각종 안전표지류 및 부착물(각종 주의·설명, 호기 표시 라벨, 승강기 고유번호판, 표식류 일체, 보수업체 비상연락 표식)(단, 승강기 안전을 위하여 “갑”이 추가 부착한 표시류는 제외)
 - 5) 각종 벨트류(핸드레일 압력벨트 제외)
 - 6) 기타 감독이 인정하는 소모성 자재류
- 8.2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재료비 및 인건비는 견적서, 작업완료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 SRS-경관-001
		개정번호 : Rev.01
		쪽번호 : 13 쪽중 8

첨부하여 실제 발생하는 금액으로 정산한다.

- 8.3 보수품질의 저하 및 용역원의 기술부족으로 부품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을”은 그에 제반되는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부품이 2회 이상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 원인을 판단하여 보고하고, “갑”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8.4 소모품 및 제반부품은 항상 확보하여 즉시 교체 보수하여야 하며, 또한 기기보수에 소요되는 부품은 기기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
- 8.5. 승강기에 부착된 각종 안전표지류는 노후 및 훼손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안전표지류 부착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8.6 “을”는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부품 구매가 장시간 소요되는 품목은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부품조달계획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체소요가 많고 고장 시 사고 및 갇힘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품은 상시 보유하여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상시 보유품목	조달계획서 제출품목
E/L(6종)	도어인버터, 도어벨트, 랜딩스위치, 엔코더, 도어인터록장치, 멀티빔	동기모터, 브레이크, 인버터, 제어반(메인보드), 도어머신, 도르래
E/S(9종)	콤, 데마게이션, 브레이크 암 및 패드, 슬레노이드(보조브레이크, 역구동방지장치)	모터, 감속기, 브레이크, 제어반(메인보드), 인버터, 구동축(기어), 핸드레일 구동장치

9. 과업내용

-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유지보수방식을 말하며 계약문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하며, 세부과업 내용은 다음 사항에 의해 수행한다.

9.1 승강기 점검

- 1)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및 기록 유지
- 2) 고장 예방을 위한 정비 등 사전 예방활동(특별점검 포함)
- 3) 기기 각부의 내외부 청소 및 기타 세척 등 청결상태 유지
- 4) 정기점검 시 엘리베이터 피트 및 에스컬레이터 기계실 내부에 설치된 배수펌프, 환풍기, 온도센서, 조작반(시건장치 포함) 등 승강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대설비의 작동 점검 및 청결상태 유지와 고장 시 보수 및 교체

9.2 승강기 검사

- 1) 안전검사(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및 기타 승강기 검사 관련 사전점검, 검사입회, 사후 조치, “갑” 요청 시 기술서류, 검사신청 등의 행정절차 대행

9.3 승강기 사고 조치

- 1) 승객 갇힘 및 사상 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 조치
- 2) 승강기 사고조사 입회 및 사후조치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 SRS-경관-001
		개정번호 : Rev.01
		쪽번호 : 13 쪽중 9

3)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보고서 제출

9.4 고장 조치

- 1) 고장발생 시 수리 및 안전조치
- 2) 소모성 부품교체 등은 “을”의 부담으로 수리하며, 장비교체 및 대수리는 “갑” 부담으로 진행한다.
- 3) 고장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보고서 제출
- 4) 예방정비를 통한 사전 조치

9.5 긴급 조치

- 1) 고장 및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출동과 응급조치, 장애제거
- 2) 집중호우 및 누수 등에 의한 기계실 및 피트 침수 시 긴급출동 조치(배수작업 등 침수 피해 최소화 조치)

9.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청소

- 1) 기계실 및 제어판 내 비산먼지 및 유류제거 청소(엘리베이터 승강로 · 유리면 제외)
- 2) 에스컬레이터 스텝 및 콤의 이물질 제거
- 3) 엘리베이터 도어씰이나 도어 레일 등의 이물질 제거

9.7 기기별 보수이력관리 등 승강설비 유지관리업무의 포괄적인 사항 등

- 1) 승강설비 관련 교육 및 기술자료 제출 협조
- 2) 승강기 부품 상세도, 교체주기 및 단가 관련 자료 등 유지관리 관련 업무 협조

9.8 기타사항

- 1) 본 과업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승강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 하는 사항 이행
- 2) 대내외 기관의 현황 파악 및 조사 등 일련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및 대처
- 3) 외부업체의 용역 및 공사 시행 등에 따른 협조 및 감독
- 4) 기타 “갑”가 용역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5) 자체점검 인력은 중보수 작업 및 다른 현장의 고장보수에 투입할 수 없으며, “을”는 중보 수 작업 및 고장보수 인력을 별도 운영하여 자체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9 상주기술인력 운영

- 1) 고장 장애 예방 점검 및 유지관리
- 2) 취약개소 및 중점관리개소 점검 및 관리
- 3) 특별점검, 발주기관 협조요청 업무 수행
- 4) “갑”에서 요구한 통계관리 수행

10. 보수품질의 수준

10.1 “을”은 계약 승강기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갑”에게 보장한다.

- 1) 월 고장건수(대당) : 1건 이하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 SRS-경관-001
		개정번호 : Rev.01
		쪽번호 : 13 쪽중 10

- 2) 월 비운행시간(대당) : 3시간 이하
3) 고장 신고 후 현장 도착시간 : 신고 후 60분 이내
- 10.2. “을”이 10.1의 품질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수준에 대해서 “갑”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월(연간) 용역비의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월 고장건수(해당호기 당월 용역비)

월 고장건수	2건	3건	4건	5건	6건 이상
용역비 삭감율	10%	20%	30%	50%	70%

2) 월 비 운행시간(해당호기 당월 용역비)

월 비 운행시간	3~4시간	4~5시간	5~6시간	6~7시간	7시간 초과
용역비 삭감율	10%	20%	30%	50%	70%

3) 장애신고 후 현장 도착시간 초과(해당호기 당월 용역비)

출동시간 (60분 이내 준수)	초과 10분 이내	초과 20분 이내	초과 30분 이내	초과 40분 이내	초과 40분 이상
용역비 삭감율	10%	20%	30%	50%	70%

- 4) “자체점검” 시행 중인 용역원이 “고장보수”등의 사유로 자체점검 중단 및 점검 소홀 등으로 “자체점검” 재시행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호기별 용역비의 100% 삭감
- 5) “을”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발생 시

고장 및 사고	중대한 고장	중대한 사고
용역비 삭감율	30%	100%

- 6) 용역원이 사고, 고장 등 출동시간 40분을 초과하는 과업수행 소홀이 월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호기의 당월 용역비의 100% 삭감(단, 중대사고로 인한 긴급복구의 경우는 제외)
- 7) 용역원 결원 시 결원인력만큼의 근무인력 계약금액(근로계약서)에서 일할 계산

$- \text{용역원 결원 감액(월간)} =$	
$\text{용역원 노무비(월)} \times$	$\frac{\text{결원일수}}{\text{(해당월 근무일수)}}$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되는 공적 휴가(예비군 훈련, 민방위 소집 등)는 제외

- 10.3 위 항의 승강기 호기별 총 삭감금액이 70% 이상인 경우 “갑”이 해당 호기에 대한 장애 원인 및 대책방안을 요구할 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사례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1. 고장범위 및 비운행시간의 정의

- 11.1 제10조의 “고장”이라 함은 승강기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갑”의 고장일지(역사에 비치된 승강기 고장·수리일지【붙임3】)에 고장발생, 고장원인 및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고 “을”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 SRS-경관-001
		개정번호 : Rev.01
		쪽번호 : 13 쪽중 11

11.2 “비 운행시간”이라 함은 고장에 따른 신고시간에서 수리 완료 시간까지를 말하며 해당 역 사 비영업시간(5시간)은 제외하고 산출한다.

11.3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10.2의 월 고장건수, 월 비운행 시간은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지진, 풍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발생 시
- 2) 승강설비의 신설, 교체, 개선공사(수선) 등에 따른 하자발생 시
- 3) 외부충격에 의한 운행정지 및 고장발생 시
- 4) 전동휠체어 등의 충돌
- 5) 외부충격으로 인한 안전스위치 작동, 승강설비 파손 등
- 6) 이물질에 의한 운행정지 및 고장발생 시
- 7) 도어씰이나 도어 레일 등에 이물질이 끼여 발생한 장애
- 8) 스텝(콤, 데마케이션 포함), 인레트, 센서류 등에 끼인 이물질로 인한 장애
- 9) 승객 부주의(과실), 조작 미숙, 오인 신고 등에 의한 고장신고
- 10) 타설비 장애에 따른 운행정지 및 고장발생 시
- 11) 화재감지기 작동 등 소방설비 연동에 따른 장애
- 12) 정전, 순간전압강하 등 전력공급계통 장애로 인한 고장
- 13) 누수, 침수 등 토목(건축) 구조물 불량으로 인한 장애
- 14) 승강기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단순장애에 대한 고장 신고 시
- 15) 엘리베이터 소음, 승차감, 조명, 버튼 불량 등에 대한 고장신고
- 16) 에스컬레이터 스텝과 스커드 마찰로 인한 소음 등
※단, 에스컬레이터 체인 및 엘리베이터 로프 조정 불량 등에 의한 소음은 제외
- 17) 부품수급에 의한 비 운행시간 중 “갑”이 인정하는 경우

12. 기성검사원 작성 및 제출

12.1 “을”은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일일업무일지, 점검표를 작성하여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2.2 “을”은 기성 지급을 위한 용역대금 청구서, 용역비 내역서, 소모자재 구매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용역검사원, 보수실적, 근무표, 출근표, 자재 수불관리대장, 고용·산재 보험 완납증명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익월 5일까지 1식으로 제출하며, “갑”은 기성검사 실시 후 합격 여부를 통보한다.

12.3 “갑”이 다음의 사항 외에도 특별히 별도 보고를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보수용 물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의 장애복구에 관한 사항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 SRS-경관-001
		개정번호 : Rev.01
		쪽번호 : 13 쪽중 12

13. 환경 및 폐기물 관리

- 13.1 “을”은 정거장 공조기계실 및 본선 환기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용역수행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및 환경오염물질(폐유, 독성물질, 발생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보관, 수집,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13.2 “을”은 1항의 현장 외 이송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을”은 업무 수행과 관련,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 시 연락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에 대한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15. 결원의 충원

- 15.1 “을”은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을”은 사전에 결원현황 및 충원계획을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15.2 결원 발생 시 부득이 업체 사정에 의하여 인원 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갑”은 인원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16. 업체 간 인수인계

- 16.1 장비 및 비품은 목록표에 의해 인수·인계하며,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업체가 부담하고 인수·인계 미비로 인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규 업체에 있다.
- 16.2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목록표를 작성·기록하여 선량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고 주어진 과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외부로 반출 또는 원본을 변경할 수 없다.
- 16.3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및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을”은 자기 비용으로 이를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16.4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7. 안전사고 및 배상 책임

- 17.1 “을”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설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 SRS-경관-001
		개정번호 : Rev.01
		쪽번호 : 13 쪽중 13

17.2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화재,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실비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8. 시설물 관리 및 부대비용

18.1 “갑”은 “을”에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사무실 및 휴게실 등), 전기, 수도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과업 수행을 위한 기타 집기류 및 소모품, 필요 장비 및 공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18.2 “을”은 “갑”이 제공하는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된 장비는 본 사업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을”은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사용 중 파손, 망실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9. 이의의 해석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갑” 내규에 따르며, 이견 발생 시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관습에 의한 해석에 따른다.

20. 보안관련

- 계약상대자는 “갑”의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1. 조문의 해석

-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사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22. 소송의 관할 법원

- 본 계약과 관련 소송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갑”이 속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23. 문서 등 귀속

-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지, 도면, 문서, 기술자료 등 일체의 자료는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갑”에 반환하여야 한다.